

생활에 유익한 법무상식



무료법률상담 이용 안내

OK! 지금은 전남시대

전세사기
학교폭력
보이스피싱
...

“법률문제, 혼자 끔찍 앓고 있나요?”

**전세사기 피해? 학교폭력 피해?
보이스피싱 피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로 해결하세요!



OK! 지금은 전남시대

“상담받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 전화상담 : 1899-8272 (평일 9~18시)
- 서면상담 : 전라남도 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 (law.jeonnam.go.kr)
- 대면상담 : 본청, 동부청사 운영 (사전 예약 필수)

“어떤 분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생활속 법률문제(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등)

OK! 지금은 전남시대

전남 도민이라면 누구나!
무료 법률상담 신청 GO!

주민조례청구 이용 안내



주민조례 발안제도란?

-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서명)로 지방의회에 주민들이 직접 만든 조례안의 발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주민조례청구는 제도가 시행된 2000년부터 지난 2024년까지 총 43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특히 별도 법률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 (’22년~) 이후 아동돌봄, 안전한 식재료 공급, 청년복지, 노동자 인권, 안전증진 등 청구 주제가 다양해지고 청구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구제외 대상(제4조) 이외에는 어떤 주제든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제외 대상)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부과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4.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기존의 조례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내용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제나, 행정의 공백을 보완하는 제도의 도입 등 지역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내용으로 청구될 경우, 서명 참여를 보다 활발히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청구하나요?

-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주민(선거권 없는 자 제외) 가운데 대표자를 선정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대표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신청기관**: 지방의회(대표전화로 문의)
 - 신청서류**: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주민청구조례안
 - 신청방법**: 서면 또는 전자(주민e직접 플랫폼, juminegov.go.kr) 청구
- 대표자 증명서 발급 후, 청구인명부에 조례 청구에 필요한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시·군·구별, 읍·면·동별 작성)을 받아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
 - 서명기간**: 지방의회의 의장이 대표자 증명서 발급 후 그 취지 등을 공표한 날부터 시·도 6개월, 시·군·구 3개월 이내
 - 서명방법**: 서면 또는 전자(주민e직접 플랫폼, juminegov.go.kr) 서명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서명수는 몇명인가요?

- 전라남도 주민조례청구 연서 주민 수는 10,395명으로, 이는 청구권자 총수 1,559,135명의 1/150에 해당한다.(2025. 12. 31.)

주민조례청구 진행절차



청구서·조례안 제출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
(대표자→지방의회)



대표자 증명서 교부, 청구취지 등 공표



서명요청, *시·도 6월 이내 / 시·군·구 3월 이내
청구인명부 제출(서명요청 기간 경과 후) *시·도 10월 이내 / 시·군·구 5월 이내



청구인명부 관련 공표, 열람 및 이의신청
* 공표한 날부터 10일 간



청구요건 심사, 수리여부 결정 및 통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종료 후 3개월 이내)



주민청구조례안 발의(의회의장 명의)
* 수리 후 30일 이내



심의·의결
* 수리 후 1년 이내 * 본회의 의결로 1년 연장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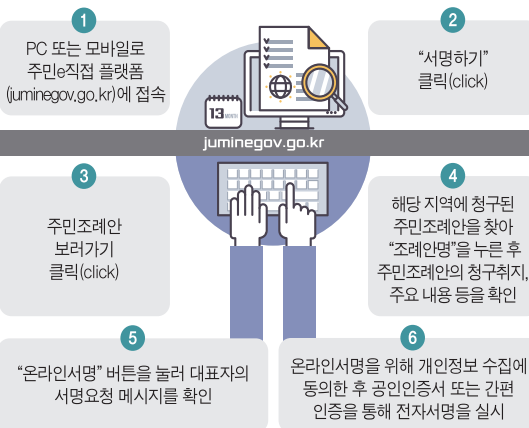


집행부 이송 및 조례 공포

청구인(대표자) 할 일 **파란색**

지방의회 할 일 **검정색**

전자서명 진행절차



CONTENTS

I	법무단신	5
II	이달의 새 법령	19
III	새로운 판례	23
IV	법령해석사례	37
V	행정심판 재결사례	49
VI	생활법률 상담사례	61
VII	외국어 생활법령정보	77
VIII	법나들이	95



법무단신



01

[판결][단독] 화물차에 치여 반려견 죽음... “개주인에 위자료 300만 원 줘라”

반려견이 화물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차량 보험사가 개주인에게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반려견의 기왕 치료비와 장례비 등에 위자료를 더해 총배상액 1400만 원을 인정했다.

개 안고가던 사람에게도 2453만 원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병룡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5일 차량 보험사 B 사가 개주인 C 씨와 C 씨의 강아지를 안고 길을 건너던 D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23가단251113)에서 “B 사는 C 씨에게 약 1403만 원을, D 씨에게 약 2453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사실관계]

2021년 6월 오후 8시경 A 씨는 B 사의 보험가입 차량인 화물차량을 운전하면서 하남시의 한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C 씨의 강아지를 안고 길을 건너던 D 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D 씨는 무릎타박상, 좌측 다발성능골골절상 등을 진단받아 입원·통원 치료를 받았고, C 씨 소유의 강아지는 폐출혈, 소뇌탈출, 배변장애 등을 입고 치료 받다가 2025년 7월 사망했다. B 사는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했고 C, D 씨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법원 판단]

법원은 A 씨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B 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B 사는 과실상계 등을 주장했다으나 법원은 C, D 씨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개주인 C 씨에 대해 재산상 손해로 반려견의 기왕치료비 916만 원, 기저귀 등 구입비 162만 원, 장례비 25만 원을 더한 1103만 원을 인정했다. 또 사

고 발생 경위와 반려견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위자료 300만 원을 인정해 총 배상액을 1403만 원으로 정했다.

D 씨에 대해선 일실수입과 기왕치료비, 위자료 500만 원을 더해 2453만 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02

[판결] 법원, “LEE 여권 소지하는 이(YI) 씨, 현실적 불편함 없을 것”

여권의 영문 성(姓) 표기를 ‘LEE’에서 ‘YI’로 변경해 달라고 낸 청구를 거부한 외교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8일 원고 이모 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 영문 변경 소송(2025구합54991)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여권에 ‘YI’ 씨로 바꾸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다는 취지다.

[사실관계]

이 씨는 충청남도의 한 군청에서 성(姓)의 로마자 표기를 ‘LEE’로 한 여권을 최초로 발급받았다. 이후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재발급받은 2차 여권 역시 마찬가지로 ‘LEE’로 표기됐다.

2024년 이 씨는 평택시청 여권 민원실을 찾아 자신의 여권 로마자 성 표기를 ‘LEE’에서 ‘YI’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령에서 정한 ‘로마자 성명 정정·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 처분을 내렸다.

이 씨는 “1차 여권 발급 당시 신청서에 ‘YI’로 적어 냈으나,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LEE’로 고쳐 발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신용카드, 금융거래, 영어능력시험, 사원증, 군 전역 증명서 등에 줄곧 ‘YI’를 사용해 왔는데, 출국 일정이 촉박해 ‘LEE’로 표기된 여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 외교부의 변경 거부 처분은 타당하다. 이 씨의 여권 영문 변경 청구는 이유 없으니 기각한다.
- 이 씨의 여권 로마자 표기를 기존 LEE로 유지하더라도 이로 인한 사익 침해 정도는 크지 않다. 외교부의 변경 거부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
- 여권법 시행령을 근거로 영문 성명 변경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권 로마자 성명은 출입국 심사 및 관리의 핵심 정보다. 변경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외국 정부가 여권 소지자의 동일성을 식별하기 어려워지는 등 출입국 관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공무원이 임의로 표기를 바꿨다”는 이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담당 공무원이 표기를 임의로 수정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담당 공무원이 가장 보편적인 표기인 LEE 표기를 권고했고, 당시 이 씨가 이를 수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 이 씨의 여권 로마자 표기를 YI로 변경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씨가 그동안 YI 표기를 사용해 왔다는 영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신용카드, 사원증 등은 관련 규정상 언제든지 신청을 통해 LEE로 변경해 재발급받을 수 있다.

03

[판결] 소환장 공판기일 잘못 기재...피고인 불출석 상태 항소기각은 '위법'

공판기일이 잘못 기재된 소환장을 발송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월 2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 사건 상고심에서 항소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5도18636).

[사실관계]

A 씨는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는 출석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제2회 공판기일을 지정해 A 씨에게 출석하라고 했다.

그러나 A 씨는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판기일을 연기하고 제3회 공판기일을 새로 지정하면서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그런데 A 씨에게 송달된 소환장의 '일시'란에는 실제 제3회 공판기일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제2회 공판기일의 일시가 기재돼 있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소환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소환장의 송달 또는 이와 동

일한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해야 하고,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사실상의 기일의 고지 또는 통지 등은 적법한 피고인 소환이라고 할 수 없다.

- 원심이 피고인에게 송달한 소환장은 ‘출석일시’가 잘못 기재돼 있는 것으로서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됐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소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의 송달이 유효하다고 보아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개정해 판결을 선고했다.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65조 등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04

[판결] ‘합격을 통보합니다’ 4분 뒤 ‘채용 취소합니다’는 부당해고

문자메시지로 합격을 통보한 지 4분 만에 곧바로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 2025년 12월 18일 인터넷 플랫폼, 핀테크,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채용취소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2025구합52952)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실관계]

A사는 2024년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 “글로벌 전략/사업개발을 주도하실 분”이라는 구인 공고를 냈다. 이에 B 씨가 지원해 두 차례 면접을 치렀다. 이후 A사는 오전 11시 56분에 B 씨에게 문자로 합격을 통보했다가, 불과 4분 뒤인 낮 12시에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고 돌연 고지했다.

B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채용 취소 구제 신청을 해 인용 판정을 받았다. A사는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되자, 서울행정법원에 부당채용취소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B 씨를 채용하려던 자회사 C사와 A사는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및 부당 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B 씨를 근로자가 아닌 전문경영인으로 채용하려 했으므로 B 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법원 판단]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합격 통보 4분 만에 문자로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 해고라는 취지다.

- A사와 자회사 C사가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A사와 C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두 회사가 형식적으로 별도 법인으로 분리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C사가 임차한 3평 남짓한 공간에서 단독으로 사무를 처리했다고 보기 어렵고, A사 홈페이지 최하단에 C사의 여행자보험 플랫폼을 소개하며 바로가기 탭까지 만 들어둔 점을 고려하면 경영상 일체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사업장이다.
- B 씨의 근로자성도 인정된다. A사의 구인 공고(청약의 유인)에 B 씨가 입사 지원(청약)을 했고, 면접 후 A사가 채용 내정을 통보(승낙)했으므로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된 상태였다. 구인 공고에 전문경영인을 채용한다는 내용이 없었고 면접 과정에서 관련 안내가 없었으며, 비교적 고액의 연봉을 받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는 부족하다. ‘A 사가 B 씨를 C사의 전문경영인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착오했다’는 주장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
- 채용 절차를 거쳐 합격 통지를 함으로써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 이상,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 채용 취소를 하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의 요건(서면 통지 등)을 갖춰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부당 해고다.

05

[판결] “영업비밀 사용과 누설·취득 각각 성립”

대법원이 영업비밀 사용죄와 누설·취득죄를 독립된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월 15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사 전 임원 이 모 씨 등의 상고심에서 영업비밀 취득·누설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5도11906).

[사실관계]

이 씨 등은 2022년경 A 사의 그래버 소스코드와 회로도 등 영업비밀을 유출했다. 영업비밀 자료를 이용해 중국 회사에서 애플향 그래버를 개발하려는 목적이었다. 피고인들은 서로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취득했다. 그래버는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에 들어가는 핵심 장치다.

[하급심 판단]

1심은 이 씨 등의 혐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했다. 피고인들은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은 영업비밀 누설·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공범자들이 각자 취득한 영업비밀에 관해 누설·취득을 한 것은 상호 간에 영업비밀을 사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달하는 행위라고 판단해서다. 제3자에 대한 영업비밀 누설, 제3자로부터의 영업비밀 취득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항소심은 이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 사의 연구·개발센터 이사였던 이 씨가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나머지 피고인은 1심 형이 유지됐다. 항소심은 영업비밀 누설·취득죄에 대해선 1심처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항소심)이 부정경쟁방지법의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시했다.

-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제3자에게 누설,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 행위를 각각 독립된 범죄로 규정한다.
- 영업비밀의 사용에 누설 또는 취득이 반드시 선행하거나 일반적·전형적으로 수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담당 직무를 수행해 영업비밀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그 비밀을 취득한 것과 다름없다. 별도의 취득 행위 없이도 영업비밀을 사용할 수 있다.
-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누설·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을 요구한다.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요구하진 않는다. 나아가 영업비밀 사용만 이뤄지는 경우보다 누설·취득돼 사용되는 경우가 법익 침해 정도와 불법성이 더 크다.
- 영업비밀 사용 공모자들 사이에서 누설이나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불균형이 발생한다. 예컨대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후 사용의 착수까지 나아갔으나 미수에 그치면 미수죄만 성립해 형법상 감경을 받는다. 반면 영업비밀 사용을 공모하지 않은 채 단순히 영업비밀을 주고받기만 한 경우에는 누설·취득으로 인한 기수죄가 성립해 감경을 받지 못한다. 영업비밀 사용의 착수에 나아간 자를 더 가볍게 처벌하게 되는 것이다.

06

[판결] 대법 “명품가방 리폼, 개인 사용 목적이면 상표권 침해 아냐”

명품 가방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개인 사용 목적으로 가방을 리폼한 경우, 리폼 과정에서 상표가 그대로 표시됐더라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했다(2024다311181). 리폼 행위의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사실관계 및 하급심]

루이비통은 자사 상표가 표시된 가방을 해체해 새로운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한 리폼업자 A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및 항소심은 리폼 제품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 씨가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개최해 의견을 두루 청취한 다음 리폼 행위는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시했다.

- 리폼 제품이 거래시장에 유통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그 제품에 상표를 표시한 행위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리폼업자가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리폼 요청을 받아 제품을 리폼한 뒤 이를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리폼 과정에서 상표가 표시되었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 형식적으로는 리폼업자가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 목적에 따라 리폼 서비스를 제공

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리폼업자가 리폼 과정을 지배·주도하면서 리폼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 이를 자신의 제품으로 상거래에 제공해 시장에 유통되게 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리폼 과정에서 이루어진 상표 표시 행위는 상표 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

- 특별한 사정의 유무는 △소유자의 리폼 요청 경위와 내용 △리폼 제품의 목적·형태·개수 등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 주체 △리폼업자가 받은 대가의 성격 △리폼에 제공된 재료의 출처와 그 비중 △리폼 제품의 소유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리폼업자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상표권자에게 있다.

[판결 의의]

대법원 관계자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사건으로, 법리의 중요성은 물론 사회적 파급효과도 상당하다”며 “법리를 최초로 선언하고, 특별한 사정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까지 함께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의 새 법령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제한 근거 마련 (『초·중등교육법』, 3. 1. 시행)

스마트기기 사용이 학생의 학습과 정서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교내에서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법률로 명확히 제한한다. 학생은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 대응을 위한 경우 등으로서 교원이 허용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을 위한 계획적인 입지 조성 등 추진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3. 26. 시행)

해상풍력발전입지의 계획적인 조성을 통해 해상풍력의 보급을 촉진하고, 해상풍력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풍황, 어업활동, 해양환경 정보를 포함한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수용성을 확보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 전문인력의 양성,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을 통해 해상풍력산업의 육성을 지원한다.

해양오염 완화를 위한 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 (『수산업법』, 3. 17. 시행)

바다에 버려지는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을 줄이기 위해 폐어구를 수거·처리하는 집하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폐어구는 바다에 버려질 경우 해양생물의 부상을 유발할 수 있고, 상당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해양환경 오염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현행 법령에도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어구를 수거·처리하는 집하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있으나, 집하장 설치를 보다 확대해 폐어구 수거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집하장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가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집하장 설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고자동차 매매유형 고지 의무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3. 23. 시행)

인터넷 광고 중인 중고자동차가 광고를 게재한 자동차매매업자의 소유인지 타인의 소유인지 명확하게 게재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광고를 하는 경우 매매유형을 명시하도록 법령이 개정된다. 자동차매매업자는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본인 소유의 매매용 자동차를 ‘직접 매도’하는 것인지, 타인이 소유한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하는 것인지 매매 유형을 밝히고, 매매 알선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매매업자인 경우 그 상호도 포함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새로운 판례



01

보험가입 및 고객 관리를 위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보험설계사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6. 2. 26. 선고 중요판결]

2024도14998 사기등 (마) 파기환송

어떤 주체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이용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제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71조 제2호에서 “제18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법 제18조 제1항의 수범자인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법 제2조 제5호).

개인정보처리자는 스스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3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거나(법 제26조),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개인정보취급자(법 제28조)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등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어떤 주체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이용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제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가 당연히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누가 개인정보처리자인지는 개인정보처리의 목적, 내용, 방법, 절차 등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은 개인정보처리의 목적이 누구의 고유한 업무 및 이익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그 목적 달성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휘 또는 감독을 하는 자가 누구인지, 개인정보파일을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생성·보유·운용하고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와 책임을 누구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와 개인정보의 적합한 처리 보장의 요청에 잘 부합하는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이 보험가입 및 고객 관리를 위하여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고객의 보험계약 내용 변경신청을 한 사안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인 피고인이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 ☞ 원심은,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전제 아래 피고인의 행위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실시하면서,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 등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모집종사자로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하는 등 개인정보처리 행위를 하더라도, 그 개인정보처리의 목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가 당사자인 보험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보험회사의 의무 이행 등 보험회사의 고유한 업무 및 이익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게 되어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 결정 권한이 보험회사에 있다고 볼 여지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와 개인정보의 적합한 처리를 위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와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도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 고유한 업무 및 이익의 주체, 개인정보처리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휘 또

는 감독을 하는 자가 누구인지 등의 사정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용한다고 기재된 개인정보파일의 존부와 그 생성·보유·운용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채, 피고인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적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전제 아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02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아닌 행위자의 고의의 의미 및 판단 기준이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26. 2. 26. 선고 중요판결]

2024도111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바) 파기환송

행위자가 별개의 납세의무자인 두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중 한 법인의 포탈세액과 관련하여 다른 법인에서 그에 관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조세포탈의 고의를 각 법인별로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조세포탈죄는 납세의무자가 국가에 대하여 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정액의 조세채무를 포탈하는 것을 범죄로 보아 형벌을 과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 또는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소정의 행위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 범의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법인세 포탈의 결과 발생 여부 및 이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 유무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인 각 법인별로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복수의 법인들 업무에 관여한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소정의 행위자가 마치 그 법인들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만든 후 그 거래 관련 비용을 매입처로 가장한 특정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면, 설령 행위자가 해당 거래 관련 수입을 가공거래의 매출처가 된 다른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 법인에 대한 법인세 포탈의 결과 발생 및 행위자의 조세포탈 범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 피고인 1(행위자)은 피고인 5 주식회사(납세의무자)에 대한 2017년 및 2018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 6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

산서의 용역비용 등을 허위로 과다 계상함으로써 피고인 5가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축소 신고하여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피고인 5의 2017년도 및 2018년도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2, 3, 4는 위와 같은 피고인 1의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로, 피고인 5는 실운영자인 피고인 1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각 기소됨

- ☞ 원심은, 피고인 1의 피고인 5 법인세 포탈세액 중 피고인 6이 법인세로 납부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1에게 조세포탈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1, 5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2, 3, 4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의 점을 이유무죄로 판단하였음
-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 1이 피고인 5에 대한 2017년 및 2018년 귀속 각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피고인 6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용역비용 등을 허위로 과다 계상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 5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감소한 이상, 피고인 5의 2017년 법인세 498,826,320원 및 2018년 법인세 288,481,380원 전액에 관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1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 1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관련 수입을 피고인 6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 5와는 별개의 법인이자 납세의무자인 피고인 6과 관련된 사정일 뿐 그 자체로 피고인 5의 조세채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 5 관련 조세포탈의 결과가 달라진다고거나 이 부분 조세포탈의 고의가 부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03

리폼업자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하고 리폼 제품을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리폼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이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여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2. 26. 선고 중요판결

2024다311181 상표권침해금지 등 (마) 파기환송

1. 리폼업자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하고 리폼 제품을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리폼 업자가 리폼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여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형식적으로는 리폼업자가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하여 리폼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리폼업자가 일련의 리폼 과정을 지배·주도하면서 리폼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 이를 자신의 제품으로서 상거래에 제공하여 거래시장에서 유통되게 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리폼업자의 리폼 행위에 수반되어 이루어진 상표 표시 행위 등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여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특별한 사정의 판단 기준

1. 상표권자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소유자가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그 상품을 다른 형태의 제품으로 변형·가공하는 이른바 리폼(alteration, customizing 또는 upcycling 등)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리폼 제품이 상거래에 제공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되는 한 리폼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은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리폼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이하 ‘리폼업자’라 한다)가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하고 리폼 제품을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리폼업자가 리폼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은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상표법 제1조).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고(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업무 표장(상표법 제2조 제1항 제9호)과는 구별된다. 상표가 표시된 상품은 상거래에 제공되는 물품이어야 함이 전제되고(대법원 1999. 6. 25. 선고 98후58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후1459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후141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상품이 거래시장에서 유통되면 수요자는 상표를 통해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게 된다.

이처럼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은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상거래에 제공되어 거래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황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상표의 사용이 상품이 상거래에 제공되는 과정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점은, 유럽연합 상표규정(European Union Trade Mark Regulation) 제8조 제4항, 제9조 제2항의 ‘상거래 과정에서의 사용(use in the course of trade)’ 요건이나 미국 연방상표법(15 U.S.C.) 제1114조, 제1127조의 ‘상업적 사용(use in commerce)’ 요건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상표의 사용이 상품의 거래시장 유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점은, 상표의 출처 식별 기능 등을 보호함으로써 거래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고 이로써 그 거래시장에서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상표법의 경쟁법적 성격에서 비롯된다.

나.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을 이와 같이 해석하는 이상, 어떤 물품에 관한 상표 표시 행위 등이 그 물품을 상거래에 제공하여 거래시장에서 유통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물품을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상표의 사용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상표권 침해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개인적 영역에 국한된 상표의 사용은 거래시장에서 보호되어야 할 상표권자의 업무상 신용이나 수요자의 이익은 물론 거래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소유자가 구매한 상품을 개인적 사용 목적으로 리폼하는 과정에서 상표 표시 행위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 그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상품 소유자는 상표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소유권 행사의 자유에 기초하여 그 상품을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이러한 소유권 행사의 범위에는 원칙적으로 상품에 대한 리폼 행위도 포함된다. 다만 리폼의 정도가 리폼 전 제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 실질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상표권 소진 원칙은 적용되지 않으므로(위 2002도3445 판결 참조), 리폼 행위로 인한 상표권 침해가 여전히 문제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리폼 제품이 상거래에 제공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되는 한, 리폼 과정에서 이루어진 상표 표시 행위 등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때 상품 소유자가 리폼 전 제품 및 리폼 제품의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리폼 전 제품을 리폼 제품으로 변형·가공하는 일련의 리폼 행위 역시 소유권 행사의 자유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

라. 상표법의 관점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에 대한 리폼 행위의 허용 여부와 그 범위를 정할 때에는 리폼 행위의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리폼 행위는 다양한 목적과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소유자가 자신의 개성이나 취향을 표현하거나, 폐기 대신 재활용(recycling) 또는 새활용(upcycling)을 통해 제품 수명을 연장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리폼 행위는 소유권 행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소비자 후생 증대, 자원 순환이용을 통한 환경적 지속 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 확보 등의 가치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리폼 행위와 관련된 상표권 보호 범위는 상표권자의 이익 외에도 위와 같은 다양한 가치들을 함께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적 사용 목적의 리폼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리폼 행위를 둘러싼 여러 가치와 이익을 조화롭게 고려한 균형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

마.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소유자의 리폼 행위를 허용하는 이상, 이를 소유자가 스스로 리폼 행위를 하는 경우로만 한정할 이유가 없다. 리폼 작업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동,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어 소유자가 스스로 리폼 행위를 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소유자가 스스로 하는 리폼 행위만 허용하고 제3자를 통한 리폼 행위는 금지한다면, 소유자에게 허용된 리폼 행위의 자유는 실질적

으로 보장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선언에 그칠 우려가 있다. 리폼 과정에서 제3자의 조력을 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리폼 행위를 대행하게 하는 것도 본질적으로는 소유권에 기초한 정당한 권리 행사의 모습이고, 이를 소유자가 스스로 리폼 행위를 하는 것과 달리 취급할 만한 뚜렷한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바.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소유자의 리폼 행위에 관한 법리는 리폼업자의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한 요청에 따른 리폼업자의 리폼 행위가 비록 업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는 소유자가 리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결과물 역시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 영역으로 귀속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리폼 과정에서는 리폼 전 제품과 리폼 제품의 소유권이 시종 일관 리폼 전 제품의 소유자에게 있고, 리폼업자가 수령하는 대가 역시 리폼 제품의 판매 대가가 아닌 리폼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에 가깝다. 이러한 점에서 소유자와 리폼업자 사이의 거래는 거래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거래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 영역으로 흡수되는 거래로 평가할 수 있다.

2. 다만 형식적으로는 리폼업자가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하여 리폼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리폼업자가 일련의 리폼 과정을 지배·주도하면서 리폼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 이를 자신의 제품으로서 상거래에 제공하여 거래시장에서 유통되게 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리폼업자의 리폼 행위에 수반되어 이루어진 상표 표시 행위 등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여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소유자의 리폼 요청 경위와 내용, 리폼 제품의 목적, 형태, 개수 등에 관한 최종적 의사 결정의 주체, 리폼업자가 수령한 대가의 성격, 리폼 제품에 제공된 재료의 출처, 그 재료가 리폼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 리폼 제품의 소유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리폼업자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상표권자에게 있다. 그 밖에도 소유자가 개인적 사용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상거래에 제공하여 거래시장에서 유통되게 할 목적으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에 대한 리폼 행위를 요청하는 등 상표권 침해행위를 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리폼업자가 리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행위에 관여하였다면, 그는 상표권 침해에 따른 공동의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상표권자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들은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가방, 지갑 등 상품에 사용되며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음. 피고는 가방, 지갑 등의 수선 및 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가방 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이 사건 등록상표들이 표시되어 있는 가방을 그 소유자들로부터 건네받아 리폼 행위를 한 다음 그 리폼 제품을 소유자들에게 반환하였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피고의 리폼 행위가 이 사건 등록상표들에 대한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피고의 리폼 행위가 원고의 상품표지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의 리폼 행위가 이 사건 등록상표들에 대한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리폼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들이 표시된 가방 소유자들의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그 소유자들로부터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하고 이 사건 리폼 제품을 그 소유자들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리폼 제품에 이 사건 등록상표들이 표시되었더라도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의 리폼 행위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04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이 신탁법상 신탁계약인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6. 2. 12. 선고 중요판결]

2025두3500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1.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신탁계약’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대내적으로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여전히 위탁자에게 실질적으로 유보되어 있고, 그 계약이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에 관한 일체의 관리·처분권을 박탈함으로써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아무런 관리 및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 신탁의 본질에 반하여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특정 계약이 그 명칭과 달리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1)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는 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판단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자료에 의하여 법원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 있음에도 단지 구체적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에게 석명을 하거나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이 없는 판결을 하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26조의 규정과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7430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8035 판결 등 참조).

2) 신탁법 제2조는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신탁법은 ‘수탁자의 권리·의무’라는 제목의 제4장에 속한 제31조 본문에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장에 속한 나머지 조항들도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각종 의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되고, 다만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참조).

‘신탁계약’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대내적으로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여전히 위탁자에게 실질적으로 유보되어 있고, 그 계약이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에 관한 일체의 관리·처분권을 박탈함으로써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아무런 관리 및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특정 계약이 그 명칭과 다르게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신탁법의 취지,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동기 및 목적, 신탁관계인으로서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계약의 내용, 계약의 이행과정 및 당사자 간의 관련 약정의 존부 및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두34929 판결 참조).

☞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동산 관리신탁계약과 위탁자 지위 이전 변경계약을 이용하면 다주택자와 법인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용역광고를 보고, 그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A를 수탁자로 하여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양도대금 10만 원에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 피고가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

으로 하여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자(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가 취득세 납부의무가 없거나 취득가액이 10만 원이어서 취득세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 원심은,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이전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신탁계약이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수탁자는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관리 및 처분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신탁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도 없었으며, 수익자는 부동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갖고 언제든지 신탁계약을 종료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10만 원을 다시 지급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위탁자 지위 이전 변경계약을 해제하고 위탁자 지위를 원상회복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권한은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에게 궁극적으로 유보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로는 명의신탁에 불과하여 무효이므로, 원고가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에 따라 위탁자 지위를 유효하게 이전받거나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법령해석 사례



1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거래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지 여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등 관련)

1. 질의요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함) 제6조제2항에서는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주소·전자우편주소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한정하며, 이하 “거래기록등”이라 함)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이하 “개인정보관련법률”이라 함)의 규정(각주: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 본문, 제36조제2항, 제37조제5항 및 제39조의7제3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본문을 말함(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5조의2 참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거래기록등(각주: 거래기록과 개인정보는 분리할 수 없는 정보라는 점을 전제함.)을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지?

2. 회답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거래기록등을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먼저 전자상거래법 제6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등은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관련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소비자가 개인

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거래기록등을 “보존해야 한다”는 의무 부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법 제6조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거래기록등을 상당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는 사업자가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거래기록등의 보존행위를 위반한 경우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대상으로 규정한 반면,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거래기록등의 보존과 관련하여서는 시정조치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한 경우와 철회하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여,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거래기록등 보존행위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보존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사업자는 거래기록등을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전자상거래법령의 체계에 부합합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4호·제22호·제23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제8호에서는 개인이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한 경우 이에 따르지 않은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정보관련 법률에서 거래 상대방에게 개인정보 파기 등의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법 제6조제2항에서는 예외적으로 사업자가 거래기록등을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자상거래법 제6조제2항에서 개인정보 파기 의무 및 제재규정에 대한 예외를 정한 것은, 사업자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거래기록등을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기록등을 보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로 하여금 거래기록등을 반드시 보존하도록 강제하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거래기록등을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 2

민원인 - 자동차의 튜닝으로 승차정원이 변경된 경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한지(「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관련)

1. 질의요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의 튜닝(각주: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물리적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하는 경우는 제외함)을 말하며(「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1호 참조), 이하 같음)으로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6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로 개조하여 승차정원이 변경된 경우(이하 “이 사안의 경우”라 함) 해당 승합자동차에 6명이 승차한다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한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승합자동차에 6명이 승차하더라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3. 이유

먼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괄호 부분 앞의 ‘9인승 이상’은 그 수식 대상이 ‘승용자동차’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승합자동차’까지 포함되는 것으로서, 승차정원 요건은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모두에 적용됩니다.

또한 같은 호 팔호 부분에서는 승차정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승차정원이 ‘12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에 대해서는 ‘승차인원 요건’을 따로 두어,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승차정원이 9인승 미만인 승합자동차는 앞서 언급한 승차정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서 통행할 수 있는 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3조 제1항제3호에 따라 튜닝검사를 받아야 하며, 「자동차등록령」 제8조의2제10항에 따라 등록관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튜닝검사를 받은 경우 등록원부에 튜닝사항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장치 일부를 변경하여 승차정원이 변경된 승합자동차의 승차정원을 판단할 경우에는 튜닝 후 변경된 차량의 등록원부에 기재된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승차정원이 6인승으로 개조된 승합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버스전용차로에서 통행할 수 있는 차의 승차정원 요건인 ‘9인승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바, 해당 승합자동차에 6명이 승차하더라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는 ‘13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에 대하여는 승차인원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1명만 승차하더라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13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가 그 차량의 규모와 구조적 특성상 다인승 운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용차로 설치 목적인 원활한 통행 확보에 부합하기 때문인바, 이러한 전용차로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차량의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를 차량의 승차정원 등을 정한 다른 규정과 비교해보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서는 다인승전용차로의 경우 “3명 이상 승차한 승용·승합자동차”를 해당 차로 통행 가능 차량으로 규정하여, 승차정원의

제한 없이 실제 승차인원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통행차량에 대해서는 승차정원과 승차인원 요건을 모두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 비고 제1호가목2)에서는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의 운전면허 적용 기준에 대하여 “차종의 변경 없이 승차정원이 감소된 경우에는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차량에 대해서는 튜닝에 의하여 승차정원이 변경된 경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승합자동차에 6명이 승차하더라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3

사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하는지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 등 관련)

1. 질의요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에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제2호),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제5호) 등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에서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둔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시·도지사는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하는지?

나.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하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먼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1조제5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서, 시·도는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므로, 해당 비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이고,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노인복지법」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가목) 또는 같은 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나목)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별표 제104호에서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로 「노인복지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입법목적 및 공익침해행위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은 민간 영역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을 소관하거나 해당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하여 일차적인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무 행정기관을 의미(각주: 법제처 2023. 11. 1. 회신 23-0668 해석례 참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위탁을 받아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까지 같은 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 기관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에 따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제2호),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제3호), 노인학대사례 판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제8호) 업무를 담당하고, 같은 법 제39조의7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노인학대가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조사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제2항), 필요한 경우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인도(제5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의 권한은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각 개별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행정권한 법정주의 원칙상 행위 주체에 대해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유추·확장하여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각주: 법제처 2024. 7. 24. 회신 24-0410 해석례 참조)인데, 이 사안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의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신고자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게 되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해당 신고를 공익신고자 보호법령에 따라 접수·처리해야 할 법적 의무와 함께 위반 시 벌칙까지 부과받게 되는바,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명문의 규정 없이 공익신고 관련 업무까지 처리하는 행정권한의 주체로 확장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에 따라 노

인복지시설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는바, 노인학대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신고를 받아 조사·조회 및 통지 등의 공익신고 관련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먼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서는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를 공익신고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별표에서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로 「노인복지법」(제10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05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대해서 「노인복지법」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서는 규정한 바가 없고, 이 비영리법인은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공단체는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아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행정을 맡아보는 기관(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의미하고, 공사나 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을 의미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거나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공사나 공단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공공의 행정을 맡아보는 공공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행정청의 권한은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각 개별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행정권한 법정주의 원칙상 행위 주체에 대해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유추·확장하여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각주: 법제처 2024. 7. 24. 회신 24-0410 해석례 참조)인데, 이 사안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의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신고자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게 되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해당 신고를 공익신고자 보호법령에 따라 접수·처리해야 할 법적 의무와 함께 위반 시 벌칙까지 부과받게 되는바,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명문의 규정 없이 공익신고 관련 업무까지 처리하는 행정권한의 주체로 확장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는바, 노인학대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신고를 받아 조사·조회 및 통지 등의 공익신고 관련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사례





사회복무요원 소집통보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4-16668

재결일자 2025-12-02

재결결과 기각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9. 24. 청구인에게 한 고(故) A에 대한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故) A(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며느리로서, 고인이 6·25전쟁 중 B군 대 한청년단 단장으로 활동하다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24. 1. 18. 피청구인에게 고인에 대한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국방부 및 C특별자치도경찰청에 고인의 참전사실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각각 참전사실 입증이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되자, 피청구인이 2024. 9. 24. 청구인에게 고인에 대한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6·25전쟁 초기 B군이 인민군 패잔병들의 습격을 받아 남하할 당시에 한청단장으로 활동하였던 고인은 주민들을 인솔하여 함께 남하하다가 실종되었고, 휴전 후 유족들은 고인이 인민군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에서도 인정하였다.

나. 한편, 피청구인은 고인의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것을 이 사건 처분의 주요 이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전쟁 이전까지 B군은 북한 지역이었으므로 인민공화국 내무서가 있었을 뿐 경찰이 상주하지도 않았고, 인천상륙작전 이후 국군이 북진하면서 소수의 경찰이 진주하며 단기간 활동하였기 때문에 관련 기록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6·25전쟁 초기 양구군은 남한과 북한이 교차 점유했던 지역이어서 심한 폭격으로 인해 건물이 모두 소실되어 공공기록물이 보존되지 못한 사정도 있다. 따라서 전쟁 당시 B군의 특수한 상황 및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상 참전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 및 경찰청장의 의견에 따라 그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인데, 고인의 참전사실 확인요청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은 당시 자위대는 경찰관서의 지휘를 받았으므로 경찰청 소관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경찰청 역시 고인이 6·25전쟁에 참전했다는 구체적인 내용 및 입증자료가 없어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회신한바, 이에 근거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관계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5조, 제9조, 제40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8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참전업무 처리 훈령(국방부훈령 제2948호) 제2조, 제5조, 제5조의4, 별표 1
 구 비상사향토방위령(법률 제196호로 1951. 5. 12. 폐지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13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인의 참전사실에 대한 국방부장관 및 C경찰청장의 회신문,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의 아들은 2021년 2월 과거사정리위원회에 고인의 사망 경위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여 진상규명 신청을 한 후 2023. 6. 25. 사망하였다.

- 다 음 -

○ 진실규명이 필요한 이유

- A는 38선 이북 지역이었던 B지역에서 대한청년단 B단장으로 조직을 이끌었으며, 1950년 음력 10월경 B에서 춘천으로 B군민들을 인솔하여 나가다가 중간에 실종되었는데, 북한군들에게 잡혀 총살을 당한 것으로 1975년경 전해 들어 부친의 명예를 찾아드리고자 함. 전쟁 후에도 장기간 실종 상태로 있었고 현재는 직접 목격한 증인을 확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전언에 의한 사실을 기술할 수 밖에 없음

나.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고인의 며느리인 청구인에게 통지한 진상규명 결정서에 따르면, 위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인의 사망이 '인민군에 의한 희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다 음 -

○ 결정서

- 이상을 검토한 결과, ① 신청인이 진실규명대상자 A의 희생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참고인 조○○과 조△△이 진실규명대상자 A의 희생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신청인, 참고인 조○○과 조△△의 진실규명대상자 A의 희생 경위에 대한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있는 점, ④ 족보와 묘비에 6·25동란 중 행방불명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⑤ 진실규명대상자 A가 도피하던 시기가 1950. 11. 18. '마석피난'(인민군의 춘천 재침) 시기와 일치하는 점, ⑥ 진실규명대상자 A의 희생 장면을 목격한 이○○이 D군에서 거주하였다는 것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실규명대상자 A는 1950년 11월경 인민군의 춘천 재침으로 도피하던 중 대한청년단 단장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인민군에 의해 희생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2024. 1. 18. 피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국방부장관에게 고인의 참전사실확인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은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 참전사실 확인 신청 관련 접수서류 검토 결과 통보

- 6·25전쟁 당시 「비상시 향토방위령」(대통령 긴급명령 제7호, 1950. 7. 22.)에 따라 청년방위대, 한청단원(대한청년단원)은 향토방위를 위해 자위대를 조직하였고, 대장은 관할 경찰서장이 임명하며, 경찰관서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았음
- 現 참전유공자법에 따라 경찰 통제하 작전 참가자는 경찰청에서 참전사실 확인을 소관하므로 회송함

라. 피청구인이 2024. 2. 20. C자치도경찰청장에게 고인의 참전사실 확인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C자치도경찰청장은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 참전사실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 대상자는 대한청년단으로 '준군사조직 소속으로 참전한 자'에 해당, 국방부 「참전업무처리 훈령」(제2573호, 2021. 7. 21.)에 따라 국방부에서 참전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 더불어 '경찰공무원 등 참전사실 확인 지침(경찰청, 2005. 6. 30.)'은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의 참전사실을 확인토록 하고 있으나, - 진실위 결정문에는 대상자가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했다는 구체적 내용 및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우리 청은 참전사실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어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피청구인은 2024. 5. 21. 국방부장관 및 C경찰청장에게 다시 고인의 참전사실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방부장관 및 C경찰청장은 각각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1) 국방부장관 회신

- 국군과 같이 활동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참전사실을 특정하고 추가 입증서류를

제출 시 참전사실 확인 절차 진행 예정(※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면, 당시 법령상 명시된 업무소관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봄)

- 2) C경찰청장 회신- 대상자는 대한청년단으로서 ‘준군사조직 소속으로 참전한 자’에 해당, 국방부 「참전업무처리 훈령」(제2573호, 2021. 7. 21.)에 따라 국방부에서 참전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 더불어 ‘경찰공무원 등 참전사실 확인 지침(경찰청, 2005. 6. 30.)’은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의 참전사실을 확인토록 하고 있으나,
 - 진실위 결정문에는 대상자가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했다는 구체적 내용 및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우리 청은 참전사실 확인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어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피청구인은 위 마항의 국방부장관 및 C경찰청장의 회신을 근거로 2024. 9.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B문화원에서 구술채록사업을 실시하여 「B의 시간」(B문화원, 2002)을 발간하였는데, 위 도서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 고인과 관련하여 아들이 진술한 부분인 43~51면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6·25 직후에 우리 아버지께서 대한청년단(이하 한청)의 단장을 했어요. 그러니 전쟁이 터지니까 한청 직원들을 다 같이 피신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54명이나 데리고 H면까지 갔대요. 거기서 “여기서 다 같이 헤어지고 평화가 찾아오면 고향에서 만나자”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는 거기서 붙들려서 행방불명되었어요. 아버지가 한청 단원들을 데리고 떠나던 날 집에 잠시 들르셨어요. 몰래 들르신 거죠 (중략)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했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아버지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엄마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은 기억나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꼭 끌어안았는데, 허리춤에 한쪽에는 권총이 다른 쪽에는 수류탄 두 개가 있었던 것도 선명하게 기억이나요. 그게 아버지와의 마지막 기억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수습할 방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집 맞은편 산에 부친의 모양을 밤나무로 깎아 만들어서 거기에 생년월일을 써서 땅에 묻고 제사를 지내라는 이야기를 해 주더라구요. 지금 이 방에서 밥을 먹으면서 문만 열면 이렇게 건너다 보이게끔, 그렇게 묘를 만들어 놓고 매년 제사를 지내면서 그리움을 달래고 있어요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 1) 참전유공자법 제2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등에 따르면, 참전유공자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한 군인,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이다. 한편,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은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신청인에 대한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또한 국방부장관 등은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받으면 그 요청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참전사실 확인통보서를 신청인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은 등록 여부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 참전유공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참전유공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에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참전유공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참전업무 처리 훈령」(국방부훈령제2948호) 제2조, 제5조의4, 별표 1에 따르면, 대한청년단, 청년방위군, 향토방위대, 치안대 등 ‘비군인’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사람의 참전사실 확인에 있어서 참전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의 신원 및 참전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참전사실 확인 신청서, 참전사실을 잘 알고 있는 2명 이상의 인우보증서 또는 전국 규모 참전단체의 참전사실 인증서 등이고, 참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증빙서류 외에 참전 당시 사진, 일기, 편지, 보도자료, 참전명단 등 참전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등으로 참전사실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인우보증 없이 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 3) 한편, 구 「비상시향토방위령」(법률 제196호로 1951. 5. 12.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비상시향토방위령’이라 한다)은 북한군의 침략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상사태 하에서 국민의 자위조직을 강화함으로써 향토를 방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시행되었는데, 비상시향토방위령 제3조, 제5조, 제6조 및 제13조 등에 따르면, 각

부락을 단위로 하여(도시는 洞里단위) 자위대를 조직해야 하고, 자위대원은 당해 부락에 거주하는 대한청년단원 또는 대한청년단리동단장이 지정한 자 중에서 대장이 선정하며(단, 공무원, 청년방위대원, 기타 공공기관의 직원은 제외한다), 자위대의 임무는 괴뢰군, 공비 기타 이에 협력하는 자의 동태에 관한 정보를 수집연락하며 부락의 방위와 방법을 목적으로 하는데, 자위대장은 소할경찰관서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나. 판단

관계법령에 따르면, 참전유공자법에서 정한 참전유공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이거나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고인의 참전사실 확인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국방부장관 및 C자치도경찰청장은 고인의 참전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고, 당시 고인이 군의 지휘·통제를 받는 군사작전에 참여하였다거나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하에 작전에 참가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한편,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대한청년단 단장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인민군에 의해 희생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와 같은 판단은 대부분 진술인들이 고인의 사망 경위와 관련하여 전해 들은 말을 증언한 것으로, 고인이 6·25전쟁 중 인민군에 의해 희생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고인이 6·25전쟁 당시에 대한청년단 단장으로 활동하였다는 점을 전제하더라도 전쟁 중 고인이 수행한 구체적인 임무의 내용 등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고인을 참전유공자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고인이 6·25전쟁에 참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고인을 참전유공자법상 참전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16103

재결일자 2025-12-09

재결결과 기각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 ○○. ○○. 청구인에게 한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좌측 슬관절 외상 후 슬와동맥 포착 증후군(혈관성형술 및 수축대유리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 ○○. ○○. A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가 ○○○○. ○○. ○○.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 ○○. ○○.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처로 인하여 수술적 치료와 재활 치료 등을 시행하였으나 좌측 슬관절 관절운동 및 신경통증이 지속되는 상태로 일상생활에 장애를 앓고 있으므로 7급에 해당하여야 하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102조,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7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9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 관련하여 확인되는 A보훈병원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 ○○. ○○.자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 상이처(질병명): 좌측 슬관절 외상 후 슬와동맥 포착 증후군(혈관성형술 및 수축대유리술)
 - 등급 및 분류번호 / 상이(장애)정도: 등급기준미달 / 등급기준미달
 - 소견: 좌측 슬관절 외상 후 슬와동맥 포착 증후군(혈관성형술 및 수축대유리술), 자주포에서 낙상, ROM시 항상 통증, EOM 0-120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 ○○.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 ○○. ○○.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재해부상군경 요건 인정상이처 '좌측 슬관절 외상 후 슬와동맥 포착 증후군(혈관성형술 및 수축대유리술)'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통증 호소하나 4분의 1 이상 운동범위를 제한할 만한 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그 밖에 상이등급

기준에 부합하는 기능장애 등도 확인되지 않아,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비해당 의결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등에 따르면, 재해부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별표 3에 따르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은 상이등급 ‘7급 8122호’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에 따르면, ‘7급 8122호’의 장애내용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 결과 KL gradeⅢ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이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 ○○. ○○. A보훈병원에서 재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자주포에서 낙상, ROM시 항상 통증, EOM 0-120’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점,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 ○○. ○○.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통증 호소하나 4분의 1 이상 운동범위를 제한할 만한 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그 밖에 상이등급 기준에 부합하는 기능장애 등도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이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한 점, ③ 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 판정은 관련

전문인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④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로 인해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mm) 이상이거나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 결과 KL gradeⅢ’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생활법률 상담사례



01

노후 생활이 걱정되어 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연금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된 3층 연금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연금은 노후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 3층 연금체계

“3층 연금체계”란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공적연금, 사적연금 등에 의해 지탱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3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는 1층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등 공적연금, 2층이 퇴직금(또는 기업연금), 3층이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으로 구성됩니다.

(출처: 재정경제부 시사경제용어사전 참조)

● 1층: 공적연금제도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제도로써 우리나라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제도를 비롯하여 특수직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출처: 국민연금 홈페이지-국민연금 용어사전)

공적연금제도는 가입과 납부가 강제되고,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상은 과거 소득과 기여 수준에 비례하며, 실질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배려되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처: 국민연금 홈페이지-국민연금 용어사전)

● 2층: 퇴직연금제도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며, 근로자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금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퇴직연금 제도안내)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가 있습니다.

● 3층 : 개인연금제도

공적연금이나 퇴직연금과는 별도로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적연금으로, 대표적인 형태로는 일정 기간 납입 후 연금 형태로 인출 시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인 연금저축이 있으며, 이는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등으로 구성된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운용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연금저축 안내 참조)

02

직장을 옮기며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전환된 이력이 있는데, 각 연금의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을 못 받을까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직원연금)에 각각 가입한 기간이 짧아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활용하면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각 제도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가입(재직/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했던 것을 연계제도를 통해 연금 간 가입기간을 합하여 최소연계기간을 충족하면 지급연령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 **연계대상 및 가입(재직/복무)기간**

연계대상인 공적연금과 그 가입(재직/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7조제1항).

- 국민연금(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른 제13조·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가입기간은 제외): 10년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10년
- 군인연금: 20년

연계기간을 산정할 때 위의 기간 중에 서로 중복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복된 기간은 연계기간에서 제외합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본문).

●연계신청 및 수급권자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지역연금에 따른 재직(복무)기간을 연계하려는 연금가입자(연금가입자였던 자를 포함)는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에 연계를 신청해야 합니다(「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다만, 연계는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이며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 지역연금의 퇴직일 시금 또는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신청해야 합니다(「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연계신청 참조).

연계신청을 한 사람이 연계기간이 10년(연계기간에 군인연금 복무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20년) 이상이고 65세 이상(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이면 연계급여(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이 생깁니다(「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부칙(법률 제9431호, 2009. 2. 6.) 제3조).

- ※ 연계급여는 퇴직일, 출생연도 등에 따라 수급권에 변동이 있으며,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https://www.ppsl.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3

부모님 두 분 모두 65세가 넘으셔서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데, 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 기초연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부모님께서 노령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령연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국가가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연령의 국민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기초연금법」 제1조 참조).

● 수급권자 및 수급요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선정기준액(2026년 기준)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 및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참조).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952,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 기초연금액 산정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노령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5항).

-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액 중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 × 2분의 1)

즉,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중복하여 받는 경우 노령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되며,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5항 및 제7조).

또한,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액됩니다(「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

● 기초연금 수급절차

기초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기초연금법」 제10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제1호).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수급자 본인 명의의 계좌(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로서 배우자 일방이 지정하는 계좌를 포함)로 입금됩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전단).

04

둘째를 출산한 아이 엄마입니다. 자녀를 출산하면 추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얼마나 인정되나요?

네,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 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이란?

-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추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 추가 산입기간

-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국민연금법」 제19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다음과 같은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됩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제1항).
 -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에 대해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 자녀의 인정 범위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는 자녀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 및 입양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는 때에 이미 사망한 자를 포함)으로 합니다(「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8541호, 2007. 7. 23.) 제19조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 「민법」에 따른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및 친양자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된 자녀

● 부모의 합의 절차

- 추가 산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인 경우에는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합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제2항).
-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 추가산입하려는 부와 모는 가입기간 산입에 대한 합의를 노령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기간 내에 합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 제한

- 자녀의 부 또는 모(양부모의 경우를 포함함)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자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부 또는 모의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할 수 없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 다른 사람의 양자로 된 경우
 - 파양(罷養)된 경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 자녀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을 할 수 없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된 자녀

05

요즘 장사가 잘 안돼서 운영하던 펜션의 규모를 줄여볼까 해요. 이런 경우에도 따로 신고가 필요한가요?

네,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줄인다면 숙박업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변경신고 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의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는 숙박업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영업소의 주소
-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3분의 1 미만의 증감도 포함)
-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 숙박업(일반)과 숙박업(생활) 간 변경

06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 어떤 사항을 지켜야 하나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 소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미리 소비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시 동의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07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가 금지되는 제품(물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만 다를 뿐 사업장으로서의 성질은 동일하므로 오프라인(off-line)사업과 마찬가지로 판매물품에 제한이 있습니다. 즉, 의약품, 담배, 도수 있는 안경 등과 같은 물품은 판매할 수 있는 요건·자격을 갖추고 있어도 국민건강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음란물이나 청소년유해물건 등은 연령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일반 영업장에서의와 마찬가지로 판매에 제한을 받습니다.

● 판매가 금지되는 물건 예시

- 담배, 마약류, 의약품,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모의총포,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및 썬글라스, 안전인증표시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 음란물, 상표권 침해 물품, 저작권 침해 물품 등은 법령상 판매에 필요한 요건·자격을 갖추고 있더라도 인터넷쇼핑몰에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 판매가 제한되는 물건 예시

- 유해화학물질 - 판매업 등록 또는 허가 대상
-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 판매업 신고 대상
-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 만 19세 이상인 자에게만 판매 가능
- 주류 - 판매업 승인 대상

08

반려묘가 죽어서 집 앞 마당에 묻어 주고 싶은데 괜찮은가요?

죽은 동물의 사체를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된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임의로 매립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체 임의 매립 및 소각 금지

-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만 매립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거나 소각하면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사체를 임의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체 투기 금지

-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를 함부로 아무 곳이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사체를 아무 곳이나 버릴 경우에는 5만원의 범칙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09

맹견은 책임보험이라는게 있던데요. 책임보험 가입은 선택사항 인가요?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 가입이 필수사항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맹견의 종류

■ “맹견”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합니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테퍼드셔 볼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6.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개의 기질평가를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 맹견의 책임보험 가입

- 맹견의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0

캠핑을 가서 등산을 하며 좀 더 산을 즐기려고 하는데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네, 등산을 할 경우에는 ① 입산통제구역이 아닌 곳을 올라야 하고, ② 산림보호구역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등의 금지행위나, ③ 보호종을 채취하는 행위, ④ 산림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은 하지 말아야 하며, ⑤ 산불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 입산통제구역

- “입산통제구역”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산림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 “산림보호구역”이란 산림에서 생활환경·경관의 보호와 수원(水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증진이 특별히 필요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합니다.
- 산림보호구역에서는 입목(立木)·죽(竹)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掘取)·채취,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행위 등이 금지 됩니다.
- 허가 없이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나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보호종의 채취 금지

- “보호종”이란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자라고 있는 수목, 초본류, 이끼류, 버섯류 등 중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보호종으로 지정한 것을 말합니다.
- 허가 없이 보호종을 벌채·굴취·채취·손상 또는 말라 죽게 하거나 그 자생지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외국어 생활법령정보



전자금융범죄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개념

-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및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합니다(「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

-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

※ 본 콘텐츠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전자금융거래시에 발생하는 금융 범죄 등을 “전자금융범죄”로 통일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전자금융범죄의 주요 유형

- 자녀납치 및 사고 빙자 편취
 - 자녀와 부모의 전화번호 등을 사전에 알고 있는 사기범이 자녀의 전화번호로 발신자 번호를 변조, 부모에게 마치 자녀가 사고 또는 납치 상태인 것처럼 가장하여 부모로

부터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학교에 간 자녀 납치 빙자, 군대에 간 아들 사고 빙자, 유학중인 자녀 납치 또는 사고 빙자 등)

- 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
 - 타인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하여 로그인한 후 이미 등록되어 있는 가족, 친구 등 지인에게 1:1 대화 또는 쪽지 등을 통해 금전, 교통사고 합의금 등 긴급자금을 요청하고 피해자가 속아 송금하면 이를 편취
-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카드로 대금 및 예금 등 편취
 - 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피싱사이트를 통해 신용카드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 및 인터넷뱅킹정보(인터넷뱅킹 ID, 비밀번호, 계좌번호, 공인인증서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를 알아낸 후, 사기범이 ARS 또는 인터넷으로 피해자명으로 카드를 받고 사기범이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통해 인터넷뱅킹으로 카드로 대금 등을 사기범계좌로 이체하여 편취
-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명의의 허위 긴급공지 문자메시지로 기망, 피싱사이트로 유도하여 예금 등 편취
 -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보내는 공지사항(보안승급, 정보유출 피해확인 등)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싱사이트로 유도한 후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동 정보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 등을 받아 편취
- 전화 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이용정보를 알아내어 금전 편취
 - 50~70대 고령층을 대상으로 전화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가입 사실을 확인하거나 가입하게 한 후, 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텔레뱅킹에 필요한 정보(주민등록번호, 이체비밀번호, 통장비밀번호, 보안카드일련번호, 보안카드코드 등)를 알아내어 피해자 계좌에서 금전을 사기범계좌로 이체하여 편취
-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화기로 유인 편취
 -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 등을 사칭하는 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세금, 보험료, 연금 등이 과다 또는 오류 징수되어 환급하여 주겠다고 자동화기로 유인, 기기를 조작하게 하여 자금을 편취
-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자금을 이체하도록해 편취
 -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자가 누군가 피해자를 사칭하여 예금인출을 시도한다고 기망한 후 거래내역 추적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사기범이 불러주는 계좌로 이체한 후 편취

- 사기범들이 학생의 대학지원 명세를 빼내 실제 대학교의 전화번호로 변조하여 학부 모 및 학생에게 전화해서 사기범계좌로 등록금 납부를 요구하여 편취
 - 신용카드정보 취득 후 ARS를 이용한 카드론 대금 편취
 - 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신용카드정보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를 알아낸 후, 사기범이 ARS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허위로 범죄자금 입금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사기범계좌로 이체토록 유도하여 편취
 - 상황극 연출에 의한 피해자 기망 편취
 - 은행직원, 경찰·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사기범들이 은행객장과 경찰서, 검찰청 등의 사무실에서 실지로 일어나는 상황 연출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 편취
 - 물품대금 오류송금 빙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
 - 사기범이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물품대금, 숙박비 등을 송금하였다고 연락한 후, 잠시후 실수로 잘못 송금하였다면서 반환 또는 차액을 요구하여 편취
- 〈출처 : 금융감독원, 민원·신고-보이스피싱 지킴이-보이스피싱 한 눈에-주요 사기유형-피싱사기-주요유형 참조〉

➡ 보이스피싱 예방 방법

- 보이스 피싱 방지
 - 음성 phishing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려면 다음 지침을 염두에 두세요 [금융감독원 (www.fss.or.kr) → 감독 → 소비자 보호 → 보이스피싱 예방 → 피해 처리 방법].
 - ① 금융 거래 정보 요청에 절대 응답하지 마세요.
 - 누군가 “개인 정보 유출” 또는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전화를 걸어 계좌 번호, 카드 번호 또는 인터넷 뱅킹 ID를 묻거나 웹사이트에 입력하라고 지시하는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준수하지 않습니다. 텔레뱅킹은 인터넷 뱅킹과 달리 공인 디지털 인증서 재발급과 같은 단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취약합니다. 다른 사람이 텔레뱅킹 정보를 입수하면 사기의 위험이 높습니다.
 - ② ATM에 가라고 하면 의심할 여지 없이 보이스피싱입니다.
 - 세금이나 보험료를 환불하거나 “계좌 안전 조치”를 취한다는 명목으로 ATM에 가지 말라는 지시를 따르지 마세요
 - ③ “아동 납치” 보이스 피싱에 대비하세요.
 - 준비하려면 자녀의 친구, 교사, 친척에게 미리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 ④ 발신자가 이미 귀하의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알고 있더라도, 메시지가 진짜인지 확인하세요.
 - 사기꾼들은 종종 이미 일부 정보를 알고 접근합니다. 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인터넷 메신저 메시지의 진위 여부를 항상 확인하세요.
- ⑤ 대상이 되는 경우 즉시 결제 중단을 요청하세요.
 - 보이스피싱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청(☎112) 또는 금융기관 콜센터에 전화하여 사기 계좌에 대한 결제 보류를 요청하세요.
- ⑥ 노출된 금융 거래 정보를 즉시 무효화합니다.
 - 유출된 금융 거래 정보를 지체 없이 취소하거나 폐기하십시오.
- ⑦ 절대 통장이나 직불카드(체크카드)를 이체하거나 빌려주지 마세요.
 - 통장이나 직불카드(체크카드)를 이체하는 것은 범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절대 아무에게도 건네지 마세요. 통장이나 카드를 이체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범죄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⑧ 발신자 번호는 스푸핑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 ‘사전 지정 텔레뱅킹 번호’ 서비스에 가입했더라도 인터넷 거래소를 통해 발신자 ID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사전 지정 번호 서비스에 가입했기 때문에 텔레뱅킹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와 같은 주장에 속지 마세요.
- ⑨ 항상 금융 기관 또는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 피싱 사이트는 합법적인 주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금융 기관 또는 공공 기관이라고 주장하는 문자나 이메일로 받은 링크는 방문하기 전에 검색하여 올바른 주소를 확인하세요.
- ⑩ “전자 금융 사기 방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
 - 공인 디지털 인증서의 무단 재발급 및 유사한 사기를 방지하려면 각 은행의 “전자금융사기방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

※ 전자 금융 사기 방지 서비스

이 서비스는 범죄자가 고객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타인 명의로 공인 디지털 인증서를 사기적으로 발급하여 자산을 탈취하는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① 기기 등록 서비스, ② 부가 authentic 서비스(기기 사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금융감독원(www.fss.or.kr) → 감독 → 소비자보호 → 보이스피싱 예방 → 주요 시스템] 등이 포함됩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

보이스피싱 전화 또는 문자를 받고, 피싱 사기범에게 이체·송금, 개인정보 제공 또는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

1. 입금 금융회사 또는 송금 금융회사콜센터에 즉시 전화하여 피해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 신청

(경찰청 112 및 금감원 1332에서도 연결 가능)

* 본인 거래 금융회사에서 본인의 모든 계좌

2.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런 URL 접속으로 **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다음 절차대로 신속 조치

☑ 휴대전화 초기화나 악성앱 삭제(초기화 전까지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 전환)

☑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다른 휴대전화 및 PC 사용을 권장)

-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pd.fss.or.kr) 접속
- 이용약관,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

☑ 본인 계좌 지급정지(일괄 또는 부분) 신청(다른 휴대전화 및 PC 사용을 권장)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접속
- 본인 계좌 지급정지 메뉴에서 은행권, 제2금융권, 증권사 클릭
- 공동인증서 및 휴대전화 인증(2중 인증)으로 본인 확인
- 지급정지를 신청할 계좌를 선택 후 지급정지 신청
-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전화)를 통해서도 지급정지 신청 가능

☑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www.msafar.or.kr) 접속
-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사건여부를 확인
-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 등에 회선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개설 차단

3. 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급정지 신청한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 서면접수(신청일 3영업일 이내, 필요서류는 방문 전 금융회사 또는 경찰서 문의)

Prevention of Voice Phishing

➡ Check the main types of voice-phishing scams.

- What is “voice phishing”?
 - “Voice phishing” is a compound word of “voice” and “phishing,” meaning “to hook personal information using voice (phone calls).” It is one type of telecommunication-based financial fraud. [Daegu Metropolitan Police Agency (dgpolice.go.kr) → Citizen Services → Understanding Voice Phishing → What is Voice Phishing?]

※ What is “phishing”?

- “Phishing” is a scheme in which an email or message that appears to be from a financial institution or public agency is sent to the victim, who is then lured to a fake website. There, the victim enters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a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s well as financial information like an account number, password, or security card numbers. The scammers use that information to access the victim’s financial accounts and withdraw funds. [Electronic Cybercrime Report & Management System (ecrm.police.go.kr) → Victim Relief System → Relief Procedures for Telecommunication-based Financial Fraud (Phishing).]

• Main types of voice phishing

- The main voice-phishing types and scam methods are as follows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www.fss.or.kr) → Supervision → Consumer Protection → Voice Phishing Prevention → Precautions]:
 - ① Extortion under the pretense of a child’s abduction or accident
 - Scammers who already know the child’s and parent’s phone numbers spoof the child’s number and call the parent, pretending the child has been in an accident or has been abducted, thereby tricking the

parent into sending money (e.g., “your child was abducted on the way to school,” “your son in the military had an accident,” “your child studying abroad was abducted or in an accident”).

- ② Impersonating an acquaintance over a messenger to request a transfer
 - After hacking another person’s internet messenger ID and password and logging in, scammers send direct messages or notes to registered family and friends to urgently request money (e.g., settlement for a traffic accident). If the victim is deceived and sends funds, the scammers take them.
- ③ Using internet banking to steal card-loan proceeds and deposits
 - By luring victims with pretexts such as identity theft, information leakage, or involvement in a crime, scammers obtain credit card information (i.e., card number, PIN, CVC) and internet banking credentials (e.g., internet banking ID, password, account number, authorized digital certificate password, security card numbers) via a phishing site. They then take out a card loan by ARS or online in the victim’s name, and transfer the card-loan proceeds to the scammer’s account through internet banking after reissuing the digital certificate.
- ④ Deception with fake emergency SMS in the name of a financial company or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leading to a phishing site to steal deposits, etc.
 - An SMS is sent as if it were an official notice from a financial company or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e.g., security upgrade or verification of information leakage). Victims are guided to a phishing site and induced to enter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which is then used to borrow funds in the victim’s name.
- ⑤ Obtaining telebanking information by phone to steal money
 - Targeting people in their 50s–70s, scammers confirm or induce telebanking enrollment over the phone. Using pretexts such as identity theft, information leakage, or involvement in a crime,

they obtain information necessary for telebanking (e.g.,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transfer PIN, account passbook PIN, security card serial number and codes) and transfer funds from the victim's account to the scammer's account.

- ⑥ Luring victims to an automated teller machine (ATM) under false pretenses
 - Impersonating officials of the National Tax Servic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or National Pension Service, scammers call victims and claim that taxes, insurance premiums, or pensions were over- or wrongly charged and will be refunded, luring victims to an ATM and directing operations to divert funds.
- ⑦ Deceiving victims into transferring funds themselves
 - Scammers steal students' college application details, spoof the actual university's phone number, then call parents and students to instruct them to pay tuition into the scammer's account.
- ⑧ Stealing card-loan funds via ARS after obtaining credit card information
 - Using pretexts such as identity theft, information leakage, or involvement in a crime, scammers obtain credit card information (i.e., card number, PIN, CVC). They then use ARS to take out a card loan in the victim's name and immediately call back to falsely claim "criminal funds were deposited," inducing the victim to transfer the funds to the scammer's account.
- ⑨ "Role-play" deception to mislead the victim
 - Impersonating bank staff or police/prosecutors, scammers stage realistic scenes in bank lobbies or offices resembling police stations or prosecutors' offices to deceive victims and extort money.
- ⑩ "Wrong amount sent" pretext to obtain money
 - Scammers send an SMS or call claiming they transferred payment for goods, accommodation fees, etc., then say it was mistakenly sent and demand a refund or the difference, thereby obtaining funds.

➡ **Be sure to learn voice-phishing prevention methods.**

- Prevention of voice-phishing
 - To prevent any loss caused by voice-phishing, keep the following guidelines in mind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www.fss.or.kr) → Supervision → Consumer Protection → Voice Phishing Prevention → How to Deal with Damages].
- ① Never respond to requests for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 If someone calls you claiming “your personal information leaked” or “you’re involved in a crime,” and asks for your account number, card number, or internet banking ID, or tells you to enter them on a website, do not comply under any circumstances. Telebanking is especially vulnerable because, unlike internet banking, it does not require steps like reissuing an authorized digital certificate; if someone else obtains your telebanking details, you are at high risk of fraud.
- ② If you are told to go to an ATM, it is voice phishing without a doubt.
 - Do not follow any instructions to go to an ATM on the pretext of refunding taxes or insurance premiums or taking “account-safety measures.”
- ③ Stay prepared for “child-abduction” voice phishing.
 - To be ready, keep contact information for your child’s friends, teachers, and relatives in advance.
- ④ Even if the caller already knows your personal or financial details, verify the message is genuine.
 - Scammers often approach you already knowing some of your information. Always verify the authenticity of any phone call, text message, or internet-messenger message.
- ⑤ If you are targeted, promptly request a payment suspension.
 - If voice phishing occurs, immediately request a payment hold on the scam account by calling the National Police Agency (☎112) or the call center of your financial institution.
- ⑥ Immediately invalidate any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that has been exposed.

- Cancel or discard any leak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without delay.
- ⑦ Never transfer or lend your bankbook or debit (check) card.
 - Transferring your bankbook or debit (check) card can be used for crime. Never hand them to anyone for any reason. Transferring a bankbook or card is a criminal offense under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nd can lead to criminal penalties.
- ⑧ Be aware that caller ID numbers can be spoofed.
 - Even if you are enrolled in a “pre-designated telebanking number” service, caller ID can still be manipulated via internet exchanges. Do not be deceived by claims such as, “Because you enrolled in the pre-designated number service, no one but you can use telebanking, so you can relax.”
- ⑨ Always confirm you are on the official website of the financial institution or agency.
 - Phishing sites do not use the legitimate address. For any link you receive by text or email that claims to be a financial institution or public agency, verify the correct address by searching before visiting.
- ⑩ Actively use the “Electronic Financial Fraud Prevention Service.”
 - To prevent unauthorized reissuance of your authorized digital certificate and similar scams, actively use each bank’s “Electronic Financial Fraud Prevention Service.”

※ Electronic financial fraud prevention service

This service was introduced to prevent scams where criminals illegally obtain a customer’s information and fraudulently issue an authorized digital certificate in another person’s name to steal assets. It includes ① a device-registration service and ② an additional-authentication service (when a device is not pre-registered)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www.fss.or.kr) → Supervision → Consumer Protection → Voice Phishing Prevention → Main Systems].

➔ If you have been victimized by voice phishing, follow these steps:

- If you fall victim to voice-phishing, take the following steps in order. [Se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www.fss.or.kr) → Supervision → Consumer Protection → Voice Phishing Prevention → How to Deal with Damages].

What to do

- ① Call the deposit-taking financial institution or the remitting financial institution's call center immediately to report the damage and request a payment suspension on the account. [National Police Agency (☎112) and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1332).]



- ② If your ID, account number, or other personal information has been leaked—or if you clicked a suspicious URL and suspect a malicious-app installation—take the following actions quickly:

- ☒ Reset your mobile phone or delete any malicious apps.
(Keep the phone powered off or switch to airplane mode until you reset it.)
- ☒ Visit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Personal Information Exposure Prevention System (pd.fss.or.kr) and register that your personal information was exposed. (Use another phone or a computer if possible.)
- ☒ Visit the Korea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 Clearings Institute's Account Information Integration Management Service (www.payinfo.or.kr) and apply for a payment suspension on your accounts (all or selected). (Use another phone or a computer if possible.)
- ☒ Visit the Korea Association for ICT Promotion's Identity Theft Prevention Service (www.msafcr.or.kr) to check whether a mobile line has been opened in your name without authorization.



- ③ Within three business days of your application, submit a written victim-relief request at the branch where you applied for the payment suspension, together with supporting documents such as an Incident/Accident Confirmation issued by a police station [Electronic Cybercrime Report & Management System (ecrm.police.go.kr)]. (Confirm required documents with the financial institution or the police before visiting.)

※ After you take these emergency actions, follow the guidance of your financial institution and the police to complete any additional steps required, such as revoking/reissuing your digital certificate or reporting the loss of your ID.

Phòng tránh lừa đảo qua điện thoại

➡ Hãy cùng tìm hiểu các hình thức lừa đảo qua điện thoại phổ biến.

- Voice phishing là gì?

- “Voice phishing” là từ ghép của “Voice” (giọng nói) và “Phishing” (tấn công giả mạo), có nghĩa là “dùng giọng nói (cuộc gọi) để đánh cắp thông tin cá nhân”. Đây là một hình thức của tội phạm tài chính qua viễn thông – điện tử [Tham khảo Sở Cảnh sát Daegu (dgpolice.go.kr) - Quảng trường Công dân - Tìm hiểu Voice Phishing - Voice Phishing là gì?].

※ Phishing là gì?

- Phishing là thủ đoạn giả danh tổ chức tài chính hoặc cơ quan nhà nước để gửi email hoặc tin nhắn cho nạn nhân, dụ nạn nhân truy cập vào trang web giả mạo. Sau khi nạn nhân nhập thông tin cá nhân như số căn cước công dân, số tài khoản, mật khẩu, mã số thẻ bảo mật, kẻ gian sẽ đánh cắp các thông tin này và truy cập vào tài khoản ngân hàng của nạn nhân để rút tiền [Tham khảo Hệ thống báo cáo tội phạm mạng (ecrm.police.go.kr) - Quy trình hỗ trợ nạn nhân - Gian lận tài chính điện tử (Phishing)]

- Các loại Voice phishing (lừa đảo qua điện thoại) chính

- Các loại hình và phương thức lừa đảo qua Voice phishing chính như sau [Tham khảo Ủy ban Giám sát Tài chính (www.fss.or.kr) - Người bảo vệ Voice Phishing - Tìm hiểu Voice Phishing - Loại hình lừa đảo chính].

① Mạo nhận bắt cóc/tai nạn trẻ em để chiếm đoạt tiền

- Thủ đoạn của kẻ lừa đảo đã biết trước số điện thoại của con cái và bố mẹ, sau đó ngụy tạo một cuộc gọi từ số điện thoại của con cái rồi lừa bố mẹ rằng con bị tai nạn hoặc bắt cóc, từ đó lừa lấy tiền từ bố mẹ (lấy lý do trẻ đang đến trường bị bắt cóc, con đi quân đội bị tai nạn, con đang du học ở nước ngoài bị bắt cóc hoặc bị tai nạn, v.v)

- ② Mạo danh người quen trên tin nhắn/ứng dụng nhắn tin để yêu cầu chuyển tiền
 - Hack ID và mật khẩu tin nhắn trên internet của người khác và đăng nhập vào, sau đó thực hiện trò chuyện 1:1 hoặc gửi tin nhắn đến người quen là gia đình, bạn bè, v.v có trong danh bạ và nhờ giúp đỡ một số tiền gấp như cần tiền mặt, tiền thỏa thuận do gặp tai nạn giao thông, v.v, khiến nạn nhân bị lừa và chuyển tiền cho kẻ lừa đảo
- ③ Dùng internet banking/phishing để chiếm đoạt tiền (vay tiêu dùng, rút tiền, v.v.)
 - Nói dối rằng nạn nhân đang bị mạo danh, lộ thông tin, dính líu vào một vụ án, v.v để thông qua một trang web Phishing lấy thông tin thẻ tín dụng (mã số thẻ, mật khẩu, mã CVC) và thông tin Internet Banking (ID, mật khẩu, số tài khoản, mật khẩu chữ ký điện tử, mã số thẻ OTP, v.v của Internet Banking), sau đó kẻ lừa đảo sẽ vay nợ bằng thẻ đứng tên nạn nhân qua ARS hoặc Internet, rồi đăng ký cấp lại chữ ký điện tử và sử dụng Internet Banking để chuyển số tiền đã vay đó vào tài khoản của mình
- ④ Gửi SMS giả mạo thông báo khẩn của tổ chức tài chính/Ủy ban giám sát tài chính để lừa, dẫn vào trang web Phishing và chiếm đoạt tiền gửi
 - Gửi tin nhắn giống như một thông báo (nâng cấp bảo an, xác nhận bị thiệt hại do lộ thông tin, v.v) được gửi từ công ty tài chính hay Viện Giám sát tài chính dẫn dụ nạn nhân đến trang web Phishing, lừa nạn nhân nhập các thông tin giao dịch tài chính rồi sử dụng thông tin đó để vay tiền bằng tên của nạn nhân
- ⑤ Lừa đảo tiền bằng cách lấy thông tin tele-banking qua điện thoại
 - Nhắm vào người cao tuổi (50 - 70 tuổi), kẻ gian gọi điện xác nhận hoặc hướng dẫn nạn nhân đăng ký tele-banking; sau đó lợi dụng danh nghĩa mạo danh, rò rỉ thông tin, hoặc liên quan vụ án để lừa nạn nhân cung cấp các thông tin cần thiết cho tele-banking (số căn

➡ Hãy ghi nhớ các biện pháp phòng tránh Voice phishing.

• Nguyên tắc phòng tránh Voice phishing

- Để phòng tránh thiệt hại do Voice phishing, bạn cần nắm các nguyên tắc sau đây [Tham khảo Ủy ban Giám sát Tài chính (www.fss.or.kr) - Người bảo vệ Voice phishing - Phải làm gì nếu bạn là nạn nhân của lừa đảo qua giọng nói? - Mẹo phòng ngừa].

① Tuyệt đối không cung cấp thông tin giao dịch tài chính.

- Nếu có cuộc gọi yêu cầu cung cấp số tài khoản, số thẻ, thông tin Internet banking hoặc yêu cầu nhập thông tin lên trang web với lý do rò rỉ thông tin cá nhân, liên quan vụ án, v.v. thì không làm theo. Đặc biệt lưu ý tele-banking: khác với Internet banking, tele-banking thường không yêu cầu thủ tục như cấp lại chữ ký điện tử nên nếu thông tin bị lộ cho người khác thì rất dễ bị lợi dụng gây thiệt hại

② Nếu bảo phải đến cây ATM thì 100% là Voice phishing.

- Nếu người gọi hẹn đưa bạn đến cây ATM với lý do hoàn thuế, trả lại tiền bảo hiểm, thực hiện “biện pháp an toàn tài khoản”, v.v. thì không được làm theo

③ Chủ động phòng tránh lừa đảo Voice phishing giả danh bắt cóc con cái.

- Để phòng tránh lừa đảo dạng “bắt cóc con cái”, hãy lưu sẵn số điện thoại của bạn bè, giáo viên, người thân của con

④ Ngay cả khi người gọi biết rõ thông tin cá nhân hoặc giao dịch của bạn, vẫn phải kiểm chứng độ thật giả.

- Hiện nay, nhiều kẻ lừa đảo đã có sẵn thông tin cá nhân hoặc thông tin tài chính của nạn nhân, vì vậy cần xác minh tính xác thực của nội dung cuộc gọi, tin nhắn hoặc tin nhắn qua ứng dụng internet

⑤ Nếu đã bị lừa, hãy yêu cầu “đóng băng” tài khoản ngay lập tức.

- Khi phát hiện bị lừa qua Voice phishing, hãy gọi ngay cho Cảnh sát (☎112) hoặc tổng đài của tổ chức tài chính để yêu cầu tạm ngừng thanh toán tài khoản liên quan đến hành vi lừa đảo

⑥ Phải hủy ngay các thông tin giao dịch tài chính đã bị lộ.

- Nếu thông tin tài chính đã bị rò rỉ, hãy ngay lập tức khóa, hủy các thông tin đó

- ⑦ Tuyệt đối không chuyển nhượng sổ tiết kiệm hoặc thẻ debit ngân hàng.
 - Việc chuyển nhượng sổ tiết kiệm hoặc thẻ ATM/thẻ ghi nợ (debit) cho người khác có thể bị lợi dụng cho hành vi phạm tội, và bị coi là hành vi vi phạm 「Luật Giao dịch tài chính điện tử」, có thể bị xử lý hình sự
- ⑧ Hãy cảnh giác vì số điện thoại hiển thị có thể bị làm giả.
 - Ngay cả khi bạn đã đăng ký dịch vụ số điện thoại xác thực trước, kẻ gian vẫn có thể giả mạo số điện thoại thông qua tổng đài Internet. Do đó, nếu có người gọi nói rằng “ngoài bản thân bạn là người đã đăng ký số chỉ định trước, không ai có thể dùng tele-banking nên hãy yên tâm” thì tuyệt đối đừng tin
- ⑨ Luôn kiểm tra kỹ xem trang web có phải là trang chính thức của tổ chức tài chính hay không.
 - Các trang web Phishing thường không có địa chỉ web bình thường, vì vậy khi nhận được tin nhắn hoặc email có chứa đường link tới ngân hàng hoặc cơ quan nhà nước, hãy tự tra cứu địa chỉ chính xác qua công cụ tìm kiếm
- ⑩ Hãy chủ động sử dụng dịch vụ “Phòng tránh gian lận tài chính điện tử”.
 - Để ngăn chặn việc người khác tái cấp chữ ký điện tử trái phép hoặc thực hiện giao dịch điện tử bất hợp pháp, bạn nên tích cực sử dụng dịch vụ phòng tránh gian lận điện tử do các ngân hàng cung cấp.

※ Dịch vụ phòng tránh gian lận tài chính điện tử

Đây là dịch vụ được thiết lập để phòng tránh thủ đoạn gian lận trong đó kẻ gian chiếm đoạt thông tin khách hàng và phát hành chữ ký điện tử trái phép nhằm chiếm đoạt tài sản tài chính. Dịch vụ gồm có: ① Dịch vụ đăng ký thiết bị cố định ② Dịch vụ xác thực bổ sung (áp dụng khi chưa đăng ký thiết bị cố định)[Tham khảo Ủy ban Giám sát Tài chính (www.fss.or.kr) - Người bảo vệ Voice phishing - Tìm hiểu Voice phishing - Hướng dẫn một số chế độ chính].

➡ **Nếu bị lừa đảo qua điện thoại (Voice phishing), hãy xử lý đúng theo hướng dẫn.**

- Cách ứng phó khi bị thiệt hại do Voice phishing
 - Khi bị Voice phishing, cần xử lý theo đúng trình tự sau đây[Tham khảo Ủy ban Giám sát Tài chính (www.fss.or.kr) - Người bảo vệ Voice Phishing - Nên làm gì nếu là nạn nhân của Voice phishing - Cách ứng phó khi bạn là nạn nhân của Voice phishing].

Cách ứng phó

- ① Gọi ngay cho tổng đài của tổ chức tài chính nơi chuyển tiền hoặc nơi nhận tiền để báo cáo thiệt hại và yêu cầu tạm ngừng thanh toán tài khoản. [Cảnh sát (☎112) hoặc Ủy ban Giám sát Tài chính (☎1332)]



- ② Nếu thông tin cá nhân (CCCD, số tài khoản, v.v.) đã bị rò rỉ, hoặc đã truy cập đường link đáng ngờ và nghi ngờ cài đặt phần mềm độc hại, hãy thực hiện ngay các bước sau:

- ☒ Khôi phục cài đặt gốc hoặc xóa app độc hại
(Trước khi khôi phục, hãy tắt nguồn điện thoại hoặc chuyển sang chế độ máy bay)
- ☒ Truy cập Hệ thống phòng ngừa rủi ro cho người bị rò rỉ thông tin cá nhân của Ủy ban Giám sát Tài chính (<https://pd.fss.or.kr/>), sau đó đăng ký thông tin cá nhân đã bị rò rỉ (nên sử dụng điện thoại khác hoặc máy tính cá nhân khác)
- ☒ Truy cập Dịch vụ quản lý tập trung thông tin tài khoản cá nhân của Ủy ban Viễn thông và Thanh toán Tài chính Hàn Quốc (www.payinfo.or.kr), sau đó đăng ký yêu cầu tạm ngừng thanh toán tài khoản (toàn bộ hoặc một phần) (nên sử dụng điện thoại khác hoặc máy tính khác)
- ☒ Truy cập Dịch vụ phòng chống giả mạo danh tính của Hiệp hội Thúc đẩy Công nghệ Thông tin và Truyền thông Hàn Quốc (www.msafar.or.kr), để kiểm tra xem có số điện thoại nào được mở trái phép dưới tên của bạn hay không



- ③ Đến chi nhánh ngân hàng đã yêu cầu tạm ngừng thanh toán và nộp hồ sơ yêu cầu bồi hoàn thiệt hại kèm theo Giấy xác nhận sự việc do Cảnh sát cấp [từ Hệ thống báo cáo tội phạm mạng (ecrm.police.go.kr)] (trong vòng 3 ngày làm việc, liên hệ trước với ngân hàng hoặc đồn cảnh sát để xác nhận danh mục giấy tờ cần chuẩn bị)

※ Sau khi đã thực hiện các biện pháp ứng phó với Voice phishing, cần thực hiện thêm các bước bảo mật bổ sung theo hướng dẫn của tổ chức tài chính và cảnh sát, chẳng hạn như hủy hoặc cấp lại chữ ký điện, báo mất giấy tờ tùy thâ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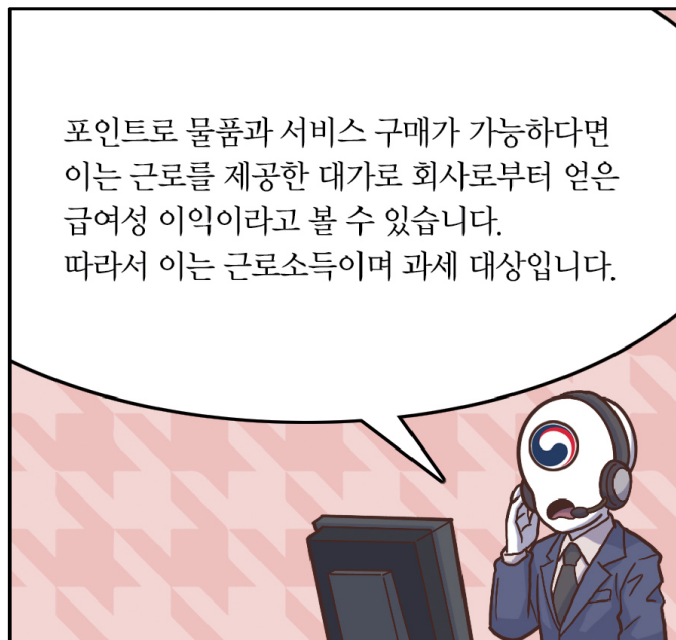
법나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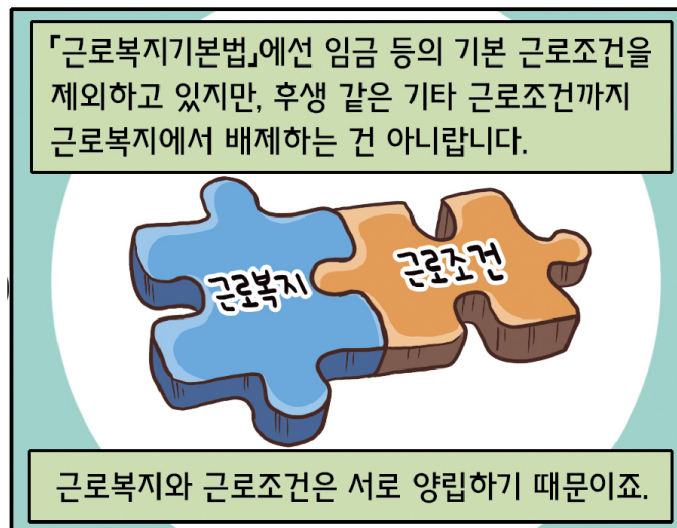
솔로몬의 선택 회사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인지에 대한 여부













참조판례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4122 판결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